

2022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시행 공고

하계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1

검정개요

- 대상자격/종목:**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검정대상:** 2022년도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면제자
-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2022. 6. 2.(목) 09:00 ~ 6. 8.(수) 18:00
특별과정 자격요건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2022. 6. 2.(목) 09:00 ~ 6. 8.(수) 18:00
응시수수료 납부	2022. 6. 2.(목) 09:00 ~ 6. 13.(월) ※ 23:59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수험표 출력	2022. 6. 14.(화) 13:00 ~ 7. 10.(일) 18:00
실기·구술시험	2022. 6. 16.(목) ~ 7. 10.(일) ※ 세부일정 참조 (시험시작 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소 입실 및 대기)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7. 19.(화) 14:00

- 검정종목 : 29개 종목** * 태권도(국기원), 동계(설상)종목 제외(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구분	종목(가나다순)
1·2급 장애인 (25)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컬링, 탁구, 테니스, 펜싱(25)
2급 장애인 (4)	당구, 카누,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4)

* 공수도,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 종목은 해당 종목단체 미 개설 등으로 자격검정 미 시행

- 응시 수수료:** 30,000원/1인
 - **시설입장료 및 장비대여료 등 실비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응시생이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종목별 세부시행공고 확인
- 심사항목:** 첨부 - 종목별 세부시행공고 확인
- 합격기준:**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합격자 발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 → 합격성적 조회
- 자격검정기관:** (주최)대한장애인체육회 / (주관)종목별 주관단체

2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 응시자격요건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인정요건)	취득절차
○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첨부2서식), 사업자등록증	필기-실기구술 - 연수(25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응 시 자 격	제출서류(인정요건)	취득절차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실기구술 - 연수(90)
○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 ·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 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증 사본,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첨부2서식)	실기구술 - 연수(40)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니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확인서	구술 - 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폭력예방교육(3)
○ 2급 생활 또는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 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제4호,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 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특례)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08년 ~ '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첨부2서식), 사업자등록증	구술

접수기간: 2022. 6. 2.(목) 09:00 ~ 6. 8.(수) 18:00

※ 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납부마감일(6.13) 23:59
또는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필히 납부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s://sqms.kspo.or.kr>)

○ 지원서 작성

- 접수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원서접수(실기·구술시험) 클릭 → 접수신청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및 증명사진 파일 등록 → 자격등급 및 응시과정 등 선택 → 고사장 선택 → 원서 접수내역 조회 → 상세조회

- 해당 응시요건 체크(해당사항 체크), 증명사진 파일 첨부, 핸드폰번호 입력(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 **필히** 입력(잘못된 번호 입력으로 인해 제출서류 보완 등 각종 안내 수신 불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특별과정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과정: 원서접수 → 서류제출·심사 합격 → 검정료 납부)

※ 일반과정 및 추가취득의 경우 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은 파일(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로 첨부
 - . 사진은 최종 합격 후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인쇄되오니 반드시 증명사진(3x4)으로 첨부 **요망**
 - . 흑백사진,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착용 사진, 기타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사진 등 불가
- 파일 첨부 및 등록버튼 클릭 후 접수확인 화면에서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첨부해야 하며, 접수기간 중 '마이페이지-사진관리'에서 수정 가능

접수마감: 시험장별 선착순 접수마감

○ 시험장이 복수로 개설된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개설된 고사장이 마감되었을 경우 별도 공지 후 추가 접수

○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6.2~6.8)에 고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후 새롭게 원서를 접수하여 고사장 변경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6.8) 18시부터는 원서접수 취소 후 재 접수 불가)

3

응시자격요건 서류제출(특별과정 해당자에 한함)

제출대상: **특별과정 원서접수자**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국가대표선수 증빙 응시자격요건 서류 및 3년 이상 지도경력 서류 제출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특별과정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자 전형에 한해 응시자격요건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필수사항)
- 원서접수 시 체크한 응시자격요건 관련 제반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증빙서류 분실 우려를 막기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제출 요망
 - 제출기간: 2022. 6. 2(목) 09:00 ~ 6. 8(수)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 (02-3434-4577)
- ※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제출처 착오, 일반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한 서류 미도달 및 응시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심사 기간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 불가

- 서류심사 결과 확인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실기구술시험 → '해당 스포츠지도사' 비고란 '상세조회' 클릭 → '서류심사' 항목에서 확인 가능
- 응시자격요건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단, 자격증은 사본 가능)
 《홈페이지 확인 방법》

 - 인정요건 등: 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제도안내 → 해당 스포츠지도사
 - 양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서식자료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대상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 기	실 기	구 술	연 수
일반 과정	①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사업자등록증	○	○	○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 기	실 기	구 술	연 수
특별 과정	① 2022년 6월 8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증 사본,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면 제	○	○	○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 기	실 기	구 술	연 수
	② 2022년 6월 8일 현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확인서	면 제	면 제	○	○
	③ (특례)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08년 ~ '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 공문(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첨부2서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면 제	면 제	○	면 제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서류심사 해당사항 없음)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 기	실 기	구 술	연 수
일반 과정	① 2022년 4월 14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	○	○
특별 과정	② 2022년 6월 8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제4호,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1 과 목 * 특수 체육 론)	○	○	○
추가 취득	③ 2022년 6월 8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 제	○	○	면 제 * 폭력 예방 교육 (3)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 해당 종목: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종류 및 발행 기관

구 분	내 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학교
경기지도 경력 (장애인선수 대상 지도)	장애인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도 경력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지도 경력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대상 지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대한장애인 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로서 활동한 경기지도 또는 지도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체육교사 (장애인 대상 지도)	학교체육교사로서 활동한 지도 경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경기지도경력 발행기관에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포함 인정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경기실적: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에 한해 인정

- ex)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ex)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또는 인정단체 포함) 또는 프로스포츠단체(문화체육관광부지정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졸업예정 관련 '22년도에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자는 졸업(학위)증명서 제출(2023.2.28까지)시 자격증 인정·발급)
- 졸업예정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

- 국가대표선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 학과: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경기지도, 체육지도자 자격증목이 포함되면 인정,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하며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 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골 프	
지정 단체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사)한국 농구연맹 [KBL]	(사)한국여 자농구연맹 [WKBL]	(사)한국 배구연맹 [KOVO]	(사)한국 프로 골프협회 [KPGA]	(사)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KLPGA]

* 제출서류 보관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

*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은 1시즌을 1년으로 인정(종료된 시즌만 인정)

4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기간: 2022. 6. 2(목) ~ 6. 13(월) 23:59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결제대행 서비스가 오류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수료 납부 → '해당 스포츠지도사' 비고란 결제하기 클릭 → 납부방법 선택 및 결제

○ 결제방법: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제(계좌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응시수수료 미납 시 접수가 취소되며 실기·구술시험 응시 불가능, 이후 추가 접수 없음

※ 가상계좌 입금 시 일부 노후화된 ATM 기기로 입금이 되지 않을 때,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결제진행이 불가능 하므로 수수료 납부 전 확인 필요

※ 가상계좌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의 응시수수료만 입금하셔야 하며, 타인의 응시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응시수수료: **30,000원**

환불규정

- 납부 기간 내 취소·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
- 납부기간 마감일 익일부터 **종목별 실기·구술검정 최초 시작일 10일전까지 취소·환불요청 시 환불수수료 5천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 * 환불시기: 검정 종료 후 2주 이내 입금(환불) 예정
- 환불신청방법
 - 검정료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수료 납부 → 비고란의 환불신청 버튼 클릭(계좌이체의 경우 환불받을 계좌 입력 필요)**
 - 검정료 납부기간 후: 각 종목별 실기구술시험 시행기관에 전화문의(접수) 후 환불신청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실기구술시험 환불신청서(홈페이지 → 고객지원 → 서식자료 → 실기구술시험 환불신청서 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 제출처: 실기구술시험을 주관하는 각 종목 단체(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검정·주관단체)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금액, 적용기간 등 환불기준 협의하여 승인이후 환불시행

※ 가족의 사망 등 발생 시 응시수수료 환불

- 검정기관이 지정한 가족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외)조부모 · 형제 · 자매 · 배우자 · 자녀에 한함) 또는 본인의 사고 ·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응시제한으로 당해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 ▶ **2022년 특별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응시 제한자**
- 입증서류는 **실기·구술시험일(시험일 포함)** 기준 30일(18시까지)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공통 : 환불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본인신분증 사본,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증(홈페이지 → 자격증·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 접수확인서 출력)
 - 가족 사망 시(시험일 7일전~시험일)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및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검정기관이 지정하는 증빙서류 (코로나19로 인한 응시 제한자 : 감염(격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서)
 - * 접수확인서(접수증) 출력방법: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상세보기 → 접수증 출력
 - * 제출처: 종목별 실기·구술시험 시행기관(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검정·주관단체)

5 실기·구술 시험 시행

일시 및 장소: 종목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지원인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수험번호 부여 및 시험 진행

※ 과정별(일반, 추가, 특별) 시험진행 순서가 상이함(해당 검정기관 문의)

심사항목 및 시험절차

- 첨부 「종목별 실기·구술 세부시행계획」 참조

- 심사항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관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문의

기타사항

- 영상은 시험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화하는 것으로 응시생 열람 및 제공 불가

-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당일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관단체에 이의신청

- '22년 필기면제 만료자 중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해 '22년 하계 실기구술시험 응시 제한(취소)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기간 1년 연장(단, 실기·구술시험 접수 및 납부 후, 코로나19를 사유로 주관 기관으로부터 응시를 제한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시험일 포함, 18시까지) 각 실기·구술시험 시행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환불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한 자에 한함
- 2022년도 하계종목 실기·구술시험 시행계획 공고일(공고일 포함)부터 적용

6 합격자 발표

합격기준: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

합격자 발표: 2022. 7. 19.(화) 14:00

기타사항

-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발표일 포함, 18시까지) ①접수 산출과정 중 전산오류 ②합격 여부에 대한 오류 ③불합격 사유에 대한 확인요청 가능

- 채점관련 질의서 접수 후 결과 안내(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채점질의서)

※ 채점관련 질의서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해당 종목단체 이메일(종목별 공고문 참고) 제출

※ 상기 채점관련 질의서는 재 채점을 위함이 아니므로 단순 전산오류 여부 등에 한하여 확인 가능함

7 유의사항

실기·구술 시험 시 필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기타 종목별 필수 지참물(종목별 시행계획 참조)

- 수험표 출력: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험표 출력 ('22. 6. 14.(화) 13시부터 출력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유효기간 내), 장애

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 중 택1

※1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수험표 등 필수 준비물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2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반드시 신여권과 함께 지참하여야 신분증으로 효력을 인정

※3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의 사본은 불인정함

□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검정기관 담당·유관부서(전 종목) 및 실기구술 주관단체 직원(소속 종목)은 응시가 제한 됩니다(담당·유관부서 이동 및 퇴사자도 해당일자로부터 1년간 응시 제한).
-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 위변조 · 기재오기 ·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종목별 집결장소에 시험시작 시간 30분 전까지 **수험표, 신분증과 해당 종목의 실기용품을 소지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많거나 검정 시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응시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검정료 외에 추가비용(장비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은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검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검정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세부계획 및 검정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응시 편의제공

- 본 응시를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장애사항 및 장애요청 사항을 선택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원서접수(실기 구술시험) 클릭 → 접수신청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및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편의지원 항목 선택 → 자격등급 및 응시과정 등 선택 → 고사장 선택 → 원서접수내역 조회 → 상세조회 → 장애증빙서류 '파일선택' 클릭 → 관련 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처 주소 확인 및 등기우편 발송
- 제출방법: 홈페이지 내 등록 또는 방문, 등기우편 제출(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2022. 6. 2.(목) ~ 6. 8.(수)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02-3434-4577)
- 제출서류

- 공 통: 편의제공 신청서(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대상별: 해당 제출서류

대 상	제출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위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포함)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원본 1부

-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뇌병변, 지체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시각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청각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수화통역사 지원
기 타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시험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기준(실기·구술검정)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内外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변하는 행위
6.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8.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는 행위
9.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0. 고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2.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의거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이 취소되며 검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검정시행 기관 연락처

-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은 종목별 주관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목별 세부시행계획 참조](#)